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전지역 지원사업 시행 의무 부과 등〉

■ 김남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1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남준 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6. 7. 29.
3. 회부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아울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이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한편(제3항),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항).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이전지역 지원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 행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 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 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군 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1) 개정안은 두 개의 항을 모두 “③”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조문의 체계에 따라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표기함.

현행	개정안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u>이전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③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의 종류·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부 대 양여 사업²⁾은 국가의 예산 투입없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이전부지에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존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통상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짐.

□ 현행법³⁾은 대체시설의 기부 및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양여에 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군사시설을 새로 이전받는 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등 개별법을 통하여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군 공항 및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이라는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임.⁴⁾

2)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정의) 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최근 국방혁신 및 부대구조 개편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 시설을 통합·이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됨.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이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은, 이전에 따른 부담을 지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편익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사 입법례를 볼 때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안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도 이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⁵⁾

둘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지”와 “이전 부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지역인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까지 포함하고 있음.⁶⁾

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과 같이 지원 대상을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로 한정할 경우 이전되는 시설의 영향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치는 경우에도 인접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몇 가지 신설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⁷⁾

□ 예를 들어, 현행 「국유재산법」은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⁸⁾ 기부재산<양여재산인 경우 그 초과분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결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8)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국방부는 기부재산<양여재산인 경우 초과분을 이전지역 대상 지원 사업에 투입할 시 결과적으로 국가재산이 이전지역 지자체에 투입 되는 것으로, 초과분의 규모가 이전지역 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사업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⁹⁾

또한,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건설비 등에 더하여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군사시설 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9) 종전부지의 가액이 큰 사업에서는 지원 필요성과 무관하게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전지역의 부담이 크더라도 종전부지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사업에서는 지원이 어렵게 되어 사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통상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대 이전사업은 현 위치에서 압축배치하거나 기존 군 부대 내로 이전, 단순 행정부대의 이전 등 이전지역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설명임.